

5. 所得稅法 施行規則中 改正令(案) 立法豫告

財政經濟院 公告 第1997-8號 1997. 2. 4

주 요 골 자

- 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에 정산하여 미리 지급받는 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과세방법으로 과세하도록 함.
- 나. 보험모집인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소득율을 최근연도의 표준소득율을 감안하여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에 대하여서는 20%,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로 정함.
- 다. 의료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료인의 경우에는 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벽지의 범위에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취약지역을 포함하여 이를 지역에 대한 의료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면에서 지원함.
- 라. 주택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던 것을 1주택의 일부를 지분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개 정 취 지

소득세법의 개정(1996. 12. 30, 법률 제5,191호)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택회보